

—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년 9월 18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2년 9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02년 9월 25일

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세무과장 김 정 일

나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238조 및 구미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: 28.979km²

■ 읍지역 : 17개리 25.274km²

- 선산읍 : 1개리 0.527km²(죽장리 일부)

- 고아읍 : 16개리 24.747km²

- 구미도시계획권 : 11개리 21.291km²(원호1.2, 문성1.2.3, 다식, 괴평1.2, 송림, 봉한1.2일부지역)

- 고아도시계획권 : 5개리 3.456km²(관심1.2, 이례, 오로, 파산리 일부지역)

■ 면지역 : 4개리 3.705km²(신당1.2, 봉산1.2리 일부지역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 제235조, 제238조, 시행령 제195조
- 구미시세조례 제83조, 제8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도시계획법에 의거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, 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시장이 그 지역을 고시하고 조례에 의거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음.
- 금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3개읍면(선산읍, 고아읍, 산동면) 21개리 28.979km² 도시계획 구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안임.
- 고아읍 도시계획구역(3.456km²), 선산읍 도시계획구역 (6.435km²중 금회고시 : 0.527km², '95고시: 1.588km², 2001고시: 4.320km²), 구미도시계획구역중 미고시된 고아지역(21.291km²), 4공단 조성지구인 산동면 일부지역(3.705km²)에 대해서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안임.
- 금번 28.979km²를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구미시 도시계획구역 전체인 총 168.218km²에 대해서 부과지역으로 확정고시 됨.
(칠곡, 아포지역 제외)
- 타법이나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며 도시계획세에 대한 추가적인 세수증대가 예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